

「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」 2024년 5차 직원 채용 공고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
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5일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※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접수 중인 각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

구분	분야	선발예정인원	급여 수준 및 기준		임용예정일
본원	6급(주임)	1	상한액	40,445천원	2024. 6. 1.
			하한액	24,728천원	
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	사무국장	1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		
	조리원	1	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		
유성아이1호점 다함께돌봄센터	돌봄선생님	1	월2,457,000원		

2 분야별 직무내역

구분	분야	직무내역
본원	6급(주임)	• 민관협력 사업 담당 및 일반 행정업무 등
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	사무국장	• 노인복지관 실무 총괄
	조리원	• 경로식당 조리 및 배식업무 등
유성아이1호점 다함께돌봄센터	돌봄선생님	• 아동 돌봄 업무, 시설 운영 지원(행정 업무 등)

3 근로조건

구분	분야	내용
본원	6급(주임)	• 근무장소 : 본원(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) • 근무시간 : 월~금 / 09:00~18:00(주40시간, 휴게시간 1시간) • 급여수준 : (상한액) 40,445천원 (하한액) 24,728천원 ※ 경력 반영하여 최종 연봉 산정(최대 120%) • 복리후생 : 예산 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(직급보조비, 사회복지업무수당, 정액급식비 등) • 임용일자 : 2024. 6. 1. 예정

구분	분야	내용
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	사무국장 조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무장소 :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(대전광역시 중구 테미로 26) 근무시간 : 월~금 / 09:00~18:00(주40시간, 휴게시간 1시간) 급여수준 :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복리후생 : 예산 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(종사자특별수당, 정액급식비 등) 임용일자 : 2024. 6. 1. 예정
유성아이1호점 다함께돌봄센터	돌봄선생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무장소 : 유성아이1호점 다함께돌봄센터 (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로 353, 송림마을3단지 주민공동시설 2층) 근무시간 : 학기: 월~금 / 10:00 ~ 19:00(19:00 이 후 이용자가 있을 경우 20:00까지 근무) 방학: 월~금 / 09:00 ~ 18:00 급여수준 : 월2,457,000원 복리후생 : 예산 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(종사자특별수당, 정액급식비 등) 임용일자 : 2024. 6. 1. 예정

※ 「근로기준법」 제54조(휴게)에 근거하여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,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부여
 ※ 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기관 내부 규정에 따름

4 지원자격

경력인정 관련 유의사항

- 입사지원서 기재경력은 경력(재직)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함
- 경력(재직)증명서 상 경력은 지원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기간, 소속부서, 담당업무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(해당기관 직인 필수)
 ※ 경력(재직)증명서 양식에 담당 업무란이 없는 경우,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해당경력을 수기로 작성 후 제출 가능(인사담당자의 성명, 직장 전화번호 필수 기재)
-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동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(국세청)와 해당 기간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할 경우 인정함
- 2개 이상의 경력기간을 합산함에 따라 1개월 미만 일수가 발생할 경우, 전체경력을 일수로 계산하여 충족여부를 판단함
 ※ 입사지원서 경력사항에 담당업무를 입력한 경우, 증명서에 해당내용이 반드시 있어야만 인정
- 지원서 작성 당시 재직 중인 경우, 경력기간은 경력(재직)증명서 발급일자 기준까지로 산정함
- 증빙하지 못하는 경력을 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허위기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 발급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함.
- 경력요건 충족여부 판단을 위한 경력기간은 경력(재직)증명서의 경력기간 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혹은 4대보험 중 1개)와 중복되는 기간만으로 산정함
 ※ 채용 시 경력인정과 근로계약 시 호봉산정의 기준은 각 지침 기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.

구분	제한사항	내용	
공통	연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년(만 60세)에 달하지 아니한 자 ※ 성별, 학력 제한 없음 	
	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아래 ① ~ 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(면접시험)까지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 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②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※ 행정구역의 통·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·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※ 재외국민(해외영주권자)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③ 공고일 이전까지 대전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※ 지방대학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함 ※ 단, 대전 지역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제외 *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 참고 	
구분	분야	제한사항	내용
본원	6급(주임)	-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

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	사무국장	자격 경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래 각 호 모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10년 이상 ③ 사회복지이용시설 중간관리자(과장) 근무경력 만 7년(8년차) 이상 ※ 단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'어린이집'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'장기요양기관(노인의료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) 제외
	조리원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조리사 자격 소지자
유성아이1호점 다함께돌봄센터	돌봄선생님	자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래 ①~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교사,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·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「청소년기본법」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

5 가점사항

구분	취업지원 대상자	장애인	비고
관련 대상	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따른 장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가점은 전형별 과락점 통과자만 인정되며, 입사지원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※ 가점이 중복될 경우, 전형별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(중복적용 불가) ※ 채용분야별 모집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미부여(근거: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제3항)
가산 점수	각 전형별 5~10점 (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점)	5점	
증빙 서류	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(제출처: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)	장애인증명서	

6 전형방법 및 합격기준

구분	대상	평가배점	평가요소	합격자 결정	심사방법
서류 전형	공통	-	공통 및 분야별 자격요건	적격/부적격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내부위원 2~3명 구성하여 심사 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의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필기 전형	인성검사 공통	-	책임감, 성실성, 적극성, 창의성 등	적격/부적격 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0점 미만 또는 부적격 시 불합격 * 평가요소 및 적부 기준은 채용전문업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* 인성성검사 결과는 면접전형 참고자료로 활용함
	전공시험 사무국장 돌봄선생님	100점	사회복지행정론(20문항) 사회복지실천론(20문항) 일반상식(20문항) 사회복지개론(20문항)	고득점자순 (5배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과락 기준: 과목별 40점 미만 / 평균 60점 미만 * 채용전문업체 대행
면접 전형	공통	100점	전문성(20) 발전성(20) 창의성(20) 윤리관(20) 성실성(20)	면접심사 평균점수 60점 이상인 자로서 고득점 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 3~4명 구성하여 심사(외부위원 1/2 이상 참여) * 면접위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-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- 구조화된 면접(경험상황발표 등) 실시

구분	대상	평가배점	평가요소	합격자 결정	심사방법
최종 합격	조리원	100점	면접전형 평균 점수	고득점자 순	- 면접전형 100%
	주임	100점	전공시험 및 면접전형 평균점수	고득점자 순	- 전공시험(70%) + 면접전형(30%) 합산
	사무국장				
	돌봄 선생님				
결격 확인	공통	-	채용신체검사서 및 증빙자료 등	증빙서류 사실(허위판명) 및 결격사유 유무	-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

(면접전형 동점자 경우) 전문성, 발전성, 창의성, 윤리관, 성실성 항목의 순서로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
예비합격자 제도 운영

- (적용기준)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이내 퇴직할 경우,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, 허위 증빙서류 발생 경우 등
- (운영기간)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까지
- (예비인원) 채용분야별 3명 이내 예비합격자 순위 부여

입사포기 관련 안내

-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가 입사포기할 경우 입사포기각서 제출을 원칙으로 함
(단,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로 차순위자에게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각서 없이 입사포기 처리)
 - 입사포기 의사를 밝히고 24시간 이내 각서 미제출 시
 - 각서 외 증빙,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

7 전형절차 및 일정

원서접수	서류전형	필기전형	면접전형	결격사유확인	신규 임용
입사지원서 등	자격기준 확인(적/부)	인성검사 전공시험	패널/그룹면접	증빙확인 등	최종합격자 결정

구분	일정	비고	
채용공고	2024. 4. 15.(월) ~ 4. 30.(화)	※ 채용규모, 채용전형, 선발배수 등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세부사항은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※ 전형별 합격자 발표는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(알림마당/채용입찰 공고)를 통해 공지 ※ 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※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	
원서접수	2024. 4. 24.(수) ~ 4. 30.(화) 18:00		
1차 전형	서류심사		2024. 5. 2.(목) ~ 5. 3.(금)
	결과발표		2024. 5. 7.(화)
2차 전형	필기시험		2024. 5. 10.(금) ~ 5. 11.(토)
	결과발표		2024. 5. 16.(목)
3차 전형	면접심사		2024. 5. 21.(화)
최종합격자 발표	2024. 5. 23.(목)		
최종합격자 서류 제출	2024. 5. 24.(금) ~ 5. 28.(화)		
신규 임용	2024. 6. 1. 예정		

8

원서접수 및 제출서류

원서접수 관련 유의사항

※ 진위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.

- 지원서 접수는 마감일(시간) 내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 지원서만 유효하므로 가급적 미리 접수 요망함.
- 지원서는 1인 1회만 제출가능하며, 동일분야 또는 타 분야 중복지원 불가함.
- 지원자격 충족 해당여부는 공고일 이전 기준으로 판단함.
- 입사지원서 기재내용의 착오, 누락,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, 특히 취업지원대상자 및 우대사항 해당자 등의 가점적용 시 입사지원서 입력정보를 기준으로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를 판단하므로 반드시 유의하여 정보 입력(합격자 발표 이후라도 불합격 처리).
- 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(비속어 사용, 자기소개서 항목 중 공란이 있는 경우, 의미 없는 문자 나열 또는 동일 내용 문구 반복, 타사명 작성오류, 자격요건 미충족자) 및 허위기재자는 감점 또는 부적격 처리됨.
- 모든 증빙서류는 지원자격 요건 충족여부 확인 용도로만 활용되며, 편견요소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등은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.
- 모든 증빙서류는 해당정보를 육안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, 낮은 해상도 또는 첨부파일 오류(파일 손상) 등의 사유로 진위여부 확인 불가시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.
- 최종제출 완료 후에는 지원서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충분한 확인 및 검토 후 제출 요망.

접수기간	접수방법	문의(연락처)
2024. 4. 24.(수) ~ 4. 30.(화) 18:00	온라인 접수 (https://dj-pass.recruiter.co.kr)	042-331-8981

※ 토,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및 채용 관련 응대가 어려움에 따라 필요 시 사전 확인 요망

○ 제출서류

※ 진위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는 해당 목적으로만 활용되며, 심사위원 등에게 제공되지 않음.

구분	대상	제출서류(제출 마감일 1년 내 발급한 서류만 유효)	제출기한
서류 전형	공통	①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*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	2024. 4. 24.(수) ~ 4. 30.(화)
	입사 지원자	사무국장 ① 직무수행계획서 1부	
	해당자	① 가산점 증빙서류 1부	
필기 전형	공통	① 주민등록초본 1부 *과거주소 및 병역사항(남성의 경우) 포함 발급	2024. 5. 17.(금) ~ 5. 20.(월)
	합격자	사무국장 ① 자격증명서 각 1부 *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만 인정(취득 예정 불가) ② 경력증명서 및 경력인정 증빙 서류(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) 각 1부	
	조리원 돌봄선생님	① 자격증명서 각 1부 *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하게 등록된 사항만 인정(취득 예정 불가)	
결격 확인	공통	①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1부 ②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③ 증명사진(JPG 파일) ④ 채용신체검사서 1부(돌봄선생님의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)	2024. 5. 24.(금) ~ 5. 28.(화)
		※ 일반채용신체검사서는 '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'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(공단 홈페이지 내 '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' 발급) ※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방법 (홈페이지) 공단 홈페이지 - 건강IN - 나의 건강관리 - 건강검진정보 - 검진결과조회 (지 사) 본인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지사 방문하여 발급 (검진기관) 우편 또는 이메일로 수검자에게 발송(본인이 검진받은 검진기관에 해당)	
		조리원 ① 잠복결핵확인서 1부 ②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1부	
		돌봄선생님 ① 건강진단결과서(보건증) 1부	
해당자 ① 경력증명서 및 경력인정 증빙 서류 각 1부			

■ 응시자 불이익 유의사항(임용취소 등)

-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**공고된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**
- 응시원서 기재 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**임용이 취소**됩니다.
-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**임용이 취소**됩니다.
- 시험 부정행위, 채용비위(인사청탁, 허위 사실 판명 등) 사실이 확인될 경우 **응시자격을 박탈**하고 **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**합니다(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 취소).

■ 블라인드채용 제도 위반사항 검토 기준

-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은 공정한 채용을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따라 인적사항을 직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고의 유무, 위반의 경중 등을 불문하고 블라인드 채용 위반, 불성실 기재 또는 공정성 저해로 전 항목 불이익(불합격 처리)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- 경험경력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하나 학교 근무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.

구분	기준 위반 예시
성명	홍씨 집안의(성)~, 저는 지원자 홍길동입니다.
성별	결혼 후 아내(남편)과 함께 생활하며~,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(어머니)가 되고자, 형(누나,언니,오빠)인 제가~, 간호사인 어머니와 언니를 보며~, 판매여왕 호칭을 얻었습니다~, 여대를 졸업하고, 여성동아리(여학생회)~, 여자축구대회~, 군복무를 현역(운전병, 군수병, 전경, 의경 등)으로 입대하여~ 의무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.(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/장교 복무는 언급 가능)
연령	올림픽(월드컵)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, 30년간 살아오면서~
출생/출신지	부산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라 왔으며~, △△ 지역 기질 등
출신학교	서울대학교 회장으로서~,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으로서~, 대학교 치어리더 동아리 '비상'에서~
가족관계	아버지께서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시고~
성실성	특정 문자 반복 기재 또는 의미해석 불가(특수기호, 자음/모음 반복 등), 질문 의도와 상관없는 내용, 타 기관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(기관명 오타 포함)
공정성	본인 성명, 가족 성명 등을 기재한 경우

참고

결격사유

대상: 본원 및 다함께돌봄센터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7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)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)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
12.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.
1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14. 경력,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
15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16.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대상: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및 다함께돌봄센터

<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>
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 - 1.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- ③ 종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대상: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

<노인복지관 제14조(임용의 제한)>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지관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 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 한 자.
 -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- 4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- 5. 전 재직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.
 - 6.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박탈 또는 정지된 자.
 - 7.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.
 - 8. 「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, 제35조 및 제35조의2」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
 -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 중 불미한 행위가 있었거나 기타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.
 - ③ 임용된 자로서 학력이나 경력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 또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 될 때에는 즉시 해임조치 한다.
-